

201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안내

※ 서류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7. <서류제출방법>” 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1. 제출서류 스캔 이미지파일 등록	동일(제출서류 스캔 이미지파일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팩스 송부	제출서류 휴대폰 촬영 후 해당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4.3.3(월) 09시 ~ 2014.3.21(금) 18시(공인인증서 필수)

- 서류제출기간 : ~ 2014.3.26(수) 18시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참고)

2. 신청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3학년도 1, 2학기(이전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지원

※ 2014학년도 1학기 입학학생의 경우

학적구분
·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1학년) : 신입생
· 2014학년도 1학기 편입생(2, 3학년) : 편입생
· 2014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 재입학생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참고 : 2014학년도 기준 환산소득표

소득분위	환산소득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차상위계층자)	~ 1,636만원(이하)
2분위	~ 2,552만원(이하)
3분위	~ 3,256만원(이하)
4분위	~ 3,884만원(이하)
5분위	~ 4,466만원(이하)
6분위	~ 5,084만원(이하)
7분위	~ 5,870만원(이하)
8분위	~ 6,931만원(이하)

4. 성적기준

대상	학점 및 성적기준	비고
신입생	·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
편입생		
재학생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5. 2014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소득분위	최대지원 장학금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차상위계층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3분위	168.75만원	168.75만원	337.5만원
4분위	123.75만원	123.75만원	247.5만원
5분위	78.75만원	78.75만원	157.5만원
6분위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7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 소득2분위 선발인 경우 최대지원 장학금 2,250,000원

- 14-1학기 수업료가 1,260,000원인 경우 국가장학금은 수업료인 1,260,000원이 지급되며 남은 국가장학금은 소멸됩니다.

6. 지원학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번, 가항목 참조)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④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4.3.3.(월) 09:00 ~ 3.21(금) 18:00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정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⑤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 2014.3.26(수) 18시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 [다운받기]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8. 장학금 반환

-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5)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문 [다운받기]

9. 기타사항

- 1) 국가장학(1유형)은 교내장학과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 2) 단, 국가장학(1유형)이 선 처리된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이 적용됩니다.

10.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